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208

발의연월일: 2025. 3. 21.

발 의 자: 강준현 · 윤준병 · 이병진

박정현 • 복기왕 • 민병덕

이광희 • 문진석 • 김교흥

전진숙 • 이인영 • 김현정

천하람 · 김주영 의원

(14인)

제안이유

2009년 탈중앙화 금융의 기치를 내걸고 세상에 등장한 분산원장 기술은 다수 참여자가 정보를 공동으로 기록·관리하여 정보의 무단 삭제 및 사후적인 변경을 보호하는 새로운 방식으로써 미래 금융 인프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 미국, 싱가포르,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증권의 발행·유통에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기존 중앙집중식 금융시스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특히 독일은 전자증권도입법 제정을 통해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전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하는 증권의 발행인도 관리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러한 글로벌 추세에 맞추어 국내에서도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증권 인프라 혁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정부는 2023년 2월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통해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전자증권인 토큰증권의 발행·유통을 제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주식 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할 수 있 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적정한 요건을 갖춘 발행인에게는 분산원 장 기술을 활용한 전자등록 업무 영위를 허용하는 한편, 증권 총량 관 리 및 권리자 보호 제도가 토큰증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여 토큰증권의 발행·유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분산원장, 분산원장등록주식등 및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정의함 (안 제2조).
- 나. 자기자본, 인력·물적설비, 이해상충방지체계 등 요건을 갖춘 발행 인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하여 전자등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 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한 자는 대주주 요건 외 등록요건을 유지하도록 하되, 자기자본 및 사회적 신용 요건은 완화된 요건을 유지하도록 함(안 제19조의4 신설).
- 라.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유지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파산하는 경우 등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등록

- 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5 신설).
- 마.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분산원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분산원장만을 이용하도록 함(안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 바. 분산원장인 전자등록계좌부의 작성 및 관리 책임을 계좌가 개설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지도록 명확히 함(안 제23조의2 제3항 신설).
- 사. 전자등록기관이 총량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좌관리기관이 분산원장을 전자등록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도록 하고, 전자등록기관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고객계좌부를 열람·출력·복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 아. 분산원장인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분산원장등록주식등과 분산원장이 아닌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 간 전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안 제23조의2제6항 신설).
- 자. 분산원장에 기재된 개인신용정보는 물리적 파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파기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에 대한 특례를 인정함(안 제23조의3 신설).
- 차.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책임으로 인하여 초과분이 발생한 경우 그

해소를 위하여 전자등록의 안정성을 확보를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 함(안 제42조의2 신설).

- 카. 금융감독원장 외에 금융위원회가 따로 지정하는 전자등록기관에도 전자증권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
- 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전자등록업무에 분산원장을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분산원장 이용에 관한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73조).
- 파. 분산원장에 기재된 개인신용정보 관리방법을 위반하거나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초과분 해소를 위한 재원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분산원장을 이용하는 계 좌관리기관이 전자등록기관의 총량관리를 위한 통지 또는 열람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5조).

법률 제 호

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하목 및 거목을 각각 거목 및 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너목(종전의 거목) 중 "하목"을 "거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제4호의2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
- 3의2. "분산원장"이란 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하여 시간순서대로 공동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하여 무단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장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그 관리 체계를 말한다.
- 4의2.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란 분산원장인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 등록된 주식등을 말한다.
- 8.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란 분산원장을 이용하여 자신이 발행하는 주식등을 전자등록하려는 자로서 제19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

를 말한다.

제5조제2항제7호 중 "대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를 "대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9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9조의2(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등록) 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7호·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 3. 권리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계좌관리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 4. 자신이 발행하는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이용하려는 분산원장이 전자등록에 적합할 것
 - 5.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및 제2

항에 적합할 것

- 6.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8.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 ③ 제2항의 등록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3(등록의 신청 등) ① 제1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하려 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 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19조의2제2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2.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3. 제2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등록결정한 내

- 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심사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의4(등록요건의 유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제19조의2에 따른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제6호를 제외하며, 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19조의5(등록의 직권말소) ① 금융위원회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1. 제19조의4를 위반한 경우
 - 2.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발행인 계좌관 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 개월 이상 계속해서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하지 아 니한 경우
 - 3.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 록을 말소한 경우
 - 4.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5. 제42조의2를 위반한 경우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 말소를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에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3조의2(분산원장의 이용 등) ①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은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분산원장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분산원장만을 이용하여야 한다.
 - ②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분산원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 ③ 분산원장인 고객계좌부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객계좌가 개설된 계좌관리기관이, 분산원장인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가 개설된 전자등록기관이 각각 고객계좌부와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의 작성 및 관리에 따른 책임을 진다.
 - ④ 제1항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하려는 계좌관리기관은 금융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 전에 이를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⑤ 해당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 전자등록된 계좌관리기관은 전자등록기관이 고객계좌부의 열람 또는 출력·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그 고객계좌부를 열람 또는 출력·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전자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

- 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을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 아닌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하거나 분산원 장등록주식등이 아닌 전자등록주식등을 분산원장등록주식등으로 전 환할 수 있다.
- 1. 발행인이 해당 주식등에 대한 권리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 2.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제23조의3(분산원장에 기재된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①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은 분산원장인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 또는 기록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이 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암호화 처리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초과분 해소를 위한 재원)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제42조에 따른 초과분에 대한 해소 의무를 이행하 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 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9조 중 "금융감독원장"을 "금융감독원장 또는 금융위원회가 따로 지정하는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73조제4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제23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전자등록업무에 분산원장을 이용하지 아니한 자
- 7.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업무에 분산원장을 이용한 자

제75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9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2.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지 아니한 자
- 9의2. 제42조의2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 1의2. 제2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 1의3.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열람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식등"이란 다음 각 목의	1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 파. (생 략)	가. ~ 파. (현행과 같음)
<u><신 설></u>	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
	자계약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
	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u>는 권리</u>
<u>하.</u> (생 략)	<u>거.</u> (현행 하목과 같음)
<u>거.</u> 가목부터 <u>하목</u> 까지의 규	<u> 너.</u> <u>거목</u>
정에 따른 권리와 비슷한	
권리로서 그 권리의 발생	
·변경·소멸이 전자등록	
계좌부에 전자등록되는 데	
에 적합한 것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권리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u><신 설></u>	3의2. "분산원장"이란 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

4. (생략) <신 설>

5. ~ 7. (생략) <신 설>

- (생 략)
 -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업허 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 다.
 - 1. ~ 6. (생 략)

멸에 관한 정보가 다수 참여 자에 의하여 시간순서대로 공동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하여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 터 보호되는 장부(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그 관리 체계를 말한다.

- 4. (현행과 같음)
- 4의2.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 란 분산원장인 전자등록계좌 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을 말한다.
- 5. ~ 7. (현행과 같음)
- 8.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란 분산원장을 이용하여 자신이 발행하는 주식등을 전자등록 하려는 자로서 제19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 제5조(전자등록업의 허가) ① 제5조(전자등록업의 허가) ① (현행과 같음)

2	

1. ~ 6. (현행과 같음)

- 7. 대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8. 9. (생략)
- ③ (생략)
- 제19조(계좌관리기관) 다음 각 호 제19조(계좌관리기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다.
 - 1. ~ 6. (생략) <u><신 설></u>
 - 7. · 8. (생략)
 - <신 설>

7.	대주주	(「자	본시장괴	<u> 금융투</u>
	<u> 자업에</u>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제	6호가	목의	대주주를
	<u>말한다.</u>	이하	같다)	

- 8. 9.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7. · 8. (현행과 같음)
- 제19조의2(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의 등록) ① 발행인 계좌관리 기관이 되려는 자는 금융위원 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7호ㆍ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하 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u>것</u>

- 2.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 3. 권리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계좌관리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 4. 자신이 발행하는 주식등의전자등록에 이용하려는 분산원장이 전자등록에 적합할것
- 5.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및 제2항에 적합할 것
- 6.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신용을 갖출 것
- 8.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 고 있을 것
- ③ 제2항의 등록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3(등록의 신청 등) ① 제

1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한다.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내 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 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 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 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없는 한 등록을 거부하여서 는 아니 된다.
- 1. 제19조의2제2항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2.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신 설>

- 3. 제2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 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 등록결정 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 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사항과 등록심사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의4(등록요건의 유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제19조의2에 따른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 2항 각 호의 등록요건(제6호를 제외하며, 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19조의5(등록의 직권말소) ① 금융위원회는 발행인 계좌관리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 제19조의4를 위반한 경우

2.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 이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발행 인 계좌관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 상 계속해서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3.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 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 4.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u>5.</u> 제42조의2를 위반한 경우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 말소를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 에게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 서장은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분산원장의 이용 등)
①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
기관은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분산원장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발행인 계좌관리기

<u>관은</u> 분산원장만을 이용하여야 한다.

- ②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분산원장을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 용하여야 한다.
- ③ 분산원장인 고객계좌부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객계좌 가 개설된 계좌관리기관이, 분산원장인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는 제23조제1항에 따라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가 개설된 전자등록기관이 각각 고객계좌부와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의 작성 및 관리에 따른 책임을 진다.
- ④ 제1항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하려는 계좌관리기관은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 전에 이를 전자등록기관 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⑤ 해당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 전자등록된 계좌관리기관은 전 자등록기관이 고객계좌부의 열 람 또는 출력·복사를 요청하

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그 고객계좌부를 열람 또는 출력·복사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전자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을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 아닌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하거나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 아닌 전자등록주식등을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을 보산원장등록주식등을 보산원장등록주식등으로 전환할수 있다.
- 1. 발행인이 해당 주식등에 대한 권리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 2.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 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 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3조의3(분산원장에 기재된 개 인신용정보의 관리) ① 전자등 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은 분

<신 설>

제69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 저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금융감독원장</u>에게 위탁할 수 있다.

산원장인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 또는 기록된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정보"라 한다)를 암호화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되는 개 인신용정보에 대해서는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의2(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의 초과분 해소를 위한 재원)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제42조 에 따른 초과분에 대한 해소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 렁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 자등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세69조(권한	의 위탁)		
<u></u>	융감독원징	또는	금융
위원회가	따로 지기	정하는	전자

제73조(벌칙)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u><신 설></u>

<신 설>

⑤ (생략)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략) <u><신 설></u>

3. ~ 9. (생 략) <u><신 설></u>

<u>등록기관</u> .
제73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4
<u>.</u>
1. ~ 5. (현행과 같음)
6. 제23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
하여 전자등록업무에 분산원
장을 이용하지 아니한 자
7.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업무에 분산원장을
이용한 자
⑤ (현행과 같음)
제75조(과태료) ①
<u>.</u>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지 아
<u>니한 자</u>
3. ~ 9. (현행과 같음)
9의2. 제42조의2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 자

- 10. · 11. (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생략)

<신 설>

<신 설>

2. ~ 15. (생략)

③ (생략)

- 10. 11. (현행과 같음)
- ② ------

-----.

- 1. (현행과 같음)
- 1의2. 제23조의2제4항을 위반하 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 1의3.제23조의2제5항에 따른열람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2. ~ 15.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